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혁신성장 확산·가속화 전략’의 세부과제로서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한
기반 강화를 실현하고자, 「산학협력법 시행령」 개정이 필요함.

우선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
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함. 또한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
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
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 연장(안 제45조)
- 나.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(안 제44조)
- 다.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(안 제42조)
- 라.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(안 제50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후 예정

3) 규제심사 추후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제1호 중 “상근”을 “상근 전담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5년”을 각각 “10년”으로 한다.

제50조 중 “전반”을 “전반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) ① (생략)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<u>상근</u>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. (생략)	제42조(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<u>상근 전담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)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. 1. (생략) 2. <u>실험실공장</u> 3. (생략)	제44조(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)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<u>5년</u> 이내인 경우 2.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	제45조(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)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2. ----- -----

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
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
5년 이내인 경우

3.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
매출하면서 「자본시장과 금융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
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
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
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
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
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

4. 자회사가 「상법」 제513조에
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
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
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
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
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
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
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

제50조(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)
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"통계
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"은
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
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을
말한다.

-- 10년 -----

3. -----

----- 10년 --

4. -----

----- 10년 --

제50조(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)

전반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
기술사업화 활동 전반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학협력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764